

4단계 BK21사업 자체 운영규정

(제정) 2021. 02. 15.

(개정) 2022. 02. 28.

(개정) 2023. 05. 29.

(개정) 2025. 03. 12.

한국해양대학교 4단계 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사업단장 체 규정

한국해양대학교 4단계 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자체운영규정

I.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사업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규정 등을 상위의 규정으로 하고 사업단 운영의 세부 지침을 만든다.

제3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업단의 구성

1. 본 규정에서의 사업단 및 사업단장은 4단계 BK21사업에서의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단장을 의미한다.
2. 본 사업단은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전공 소속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3. 사업단의 부단장을 두어, 사업단장의 부재시 사업단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포함 참여교수와 사무원으로 이루어지며 사업단 내규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부단장으로 하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운영일반 영역 등에 대한 책임교수를 둔다.

II. 집행

제1장 대학원생 지원

제6조 대학원생 용어의 정의

1.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 전원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단, 군복무 및 휴학기간 등 한국연구재단의 상위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한 예외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2.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선발하여 연구 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3.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별첨1]의 선발 및 평가규정에 따라 지도교수 및 사업단장과의 협의로 선발된다.

제8조 지원기간

과제수행기간인 2020. 09~2027. 08까지 한 학기 단위(6개월)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를 위하여 학생별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액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연구 활동 기여도, 교육기여도(학부 학생 대상 조교활동), 대학원 수업 충실도, 지도교수 평가 등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인당 월 지급 하한액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13조 2항에 따른다.

제10조 의무

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단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별첨1] 3조의 의무를 가진다.
2.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요구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대학원생은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으나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6시간 이내의 강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

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4.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BK사업 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개인적 사정에 의한 본국체류 기간이 장기연수와 마찬가지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

1. 우수 연구실적을 보고한 대학원생에게 사업단장 상을 수여하고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상의 수여와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시기, 방법,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제12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1. 사업단 참여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신재생에너지융합전공 소속의 교수로 제한하며, 사업단 자체 평가에 따라 참여교수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참여교수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신재생에너지융합전공 소속의 교수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말일까지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를 지원받고, 매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업적 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수를 선정하고 사업단 참여교수로 선발할 수 있다.
3.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은 [별첨2] 참여교수에 대한 운영지침 중 논문, 석박사 배출 점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참여교수 성과금

제13조 참여교수 성과금

참여교수 성과금에 관한 모든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 (평가기준 포함)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지난 1년간 연구실적을 BK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구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산정기준은 [별첨2]의 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4조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로 구성한다.

제15조 임용절차 및 기준

1.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원(박사후연구원), 비전임교원(계약교수) 임용 기준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2. 계약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주저자로 저술한 논문 게재 실적이 5편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채용기준은 최근 3년간 주저자로 저술한 논문 게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참여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70점)과 사업단 기여가능성(20점), 기타 지원자의 자질(10점)을 합하여 가장 우수한 자를 채용한다. 이때 논문점수는 [별첨2] 운영지침의 논문 실적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신진연구인력 지원자의 점수를 산정한다.

제16조 계약기간 및 지원금액

1.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2. 1인당 월 지급 하한액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른다.

제17조 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여 6개월 기준 국외논문(주,교신저자) 1편 이상 투고를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또한,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BK사업의 기여도(논문, 학회발표 실적, 연구사업)와 학과 기여도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

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별첨6]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 허가 업무 지침에 따른다.

1. 시간강의

① 박사후 과정생

박사후 과정생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② 계약교수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2. 타과제 참여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4단계 BK21사업 포함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 및 집행은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지침’의 박사후 연구원(박사학위소지자, Post-doc포함) 월 지급단가 기준을 따른다.

제19조 포상

1. 우수 연구실적을 보고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사업단장 상을 수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상의 수여와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시기, 방법, 규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해외 석학 초빙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지원 경비에 관한 지침

제20조 해외 석학 초빙자 선정 및 경비

1. 해외석학은 참여교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강의료 등 지급액은 사업단 예산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규정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3.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

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4.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1조 국제화 활동 지원 경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개선을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15일 이하), 장기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가급적 많은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 장기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선발을 위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기 지원 실적이 적은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국제화 활동 지원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국제학술대회

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제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② 체제비는 2주 이내에 한해 지원될 수 있다.

③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류

1. 학술대회 등록비, 경비 지급신청서 1부 (별첨 3-1, 3-2, 3-3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별첨 4호 서식)
3.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4. 항공권 INVOICE 1부
5. 학회 Accept Letter 1부
6.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⑤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별첨 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

1.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별지 5호 서식)
2.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2. 단기, 장기 해외 연수

①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
의 연수 활동을 말하며, 단기해외연수는 15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② 연수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
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해외연수 지원자는 사업단이 지정하는 서류(단기(장기)연수 신청서, 연수계획서 등)를
소정 기일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연수 대상자는 3항의 서류와 연수대상기관, 연구 관심 분야,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
하고 참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⑤ 지원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⑥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 항공권, 출입국
증명서 및 연수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첨1]

4단계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선발 및 평가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4단계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대학원생 선발 및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생 선발)**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들의 선발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에 따라 석·박사 과정별 선발 학생은 최종 지도교수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다. 단, 예외적으로 신입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선발된다.
3. **(장학금 지원)** 선발된 대학원생에게는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월 160만원 이상,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하여 연구역량 향상에 대한 경쟁을 유도한다. 장학금의 차등 범위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장학금 총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4. **(의무)** 선발 시, 지원받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 i) 석사과정
 - 학위 취득 전 국내 등재지 이상 1편 게재(또는 게재승인) +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이상 발표
 - ii) 박사과정
 - 학위 취득 전 SCI(E)급 2편 게재(또는 게재승인) + 국제학술대회 논문 2편 이상 발표

제 2장 대학원생 평가

5. **(평가대상)**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으로서 사업단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6. **(평가내용)** 평가내용은 연구 활동, 학술활동 및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한다.

7. (평가주기 및 평가기준일) 평가주기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평가기준일은 매년 2월과 8월 말일로 한다.

8. (평가방법) ① 평가실적은 최근 1년으로 한다. 단, SCI, SCIE, SCOPUS 논문은 최근 2년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는 매년 3월과 9월 2째 주까지 개인별 업적평가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단은 개인별 업적평가조서 항목별 평점표에 의하여 개인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9. (평가결과의 활용) 사업단은 개인별 평가 결과를 장학생 선발,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단 운영에 활용한다.

<개인별 업적평가조서 항목별 평점표>

업적내용	평 가 항 목	편/건 당 기준점수	편/건	점 수	평가기간
논문 게재 ¹⁾	SCI(E)	50			최근 2년
	SCOPUS	20			최근 2년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	15			최근1년
학술대회 발표 ²⁾	국제학술대회 발표	6			최근1년
	국내학술대회 발표	3			최근1년
사업단 기여도	사업단 학술행사지원	3			최근1년
	연구협력 기여도	25			최근1년
합계	총 점				

1) 논문 게재 실적은 저널 논문 환산편수(4단계 BK21사업 자체 운영규정 [별첨 1-1] 참조)로 기재하며, 온라인 게재(최종 출판 이전)된 논문까지 인정

2)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발표자로 학술대회에서 참석하여 구두/포스터 발표한 건수를 기재

[별첨1-1]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논문 실적의 저자 기여율 산정 기준

4단계 BK21 사업에서 활용하는 ‘저널 논문 환산편수’를 이용하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의 선발 및 성과 평가 시 논문 실적에 대한 저자 기여율을 반영한다.

<저널 논문편수 환산공식>

-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일 때는 1/m)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 + n)
-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n>0) = $\{1 - m * \min(1/(m+0.5), 0.5)\} / n$
- ▶ 예외조항
 -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주저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 각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는 1/T로 한다.
 - 기타(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가.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 ※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나. 교신저자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저자로 간주함

주저자 수(m)	기타저자 수(n)	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min\{1/(m+0.5), 0.5\}$	기타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1-주저자총점수)/n$	전체 저자 논문 환산 편수 합
1	0	1	0	1
1	1	1/2	1/2	1
1	2	1/2	1/4	1
1	3	1/2	1/6	1
2	0	1/2	0	1
2	1	2/5	1/5	1
2	2	2/5	1/10	1
2	3	2/5	1/15	1
2	4	2/5	1/20	1
3	0	1/3	0	1
3	1	2/7	1/7	1
3	2	2/7	1/14	1
3	3	2/7	1/21	1
3	4	2/7	1/28	1
4	0	1/4	0	1
4	1	2/9	1/9	1
4	2	2/9	1/18	1
4	3	2/9	1/27	1

[별첨2]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적 경비 운영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양대학교 4단계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과급 지급 기준) 사업단의 성과급은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석·박사 배출,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
3. (성과 평가자료 제출) 참여교수는 교원업적평가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년도의 논문 실적, 석·박사 배출 실적 및 기타 실적(학술대회, 특허 등)의 업적 현황을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달의 1일까지 사업단 사무실로 제출한다.
4. (성과 평가)
 - ① 평가 대상의 업적은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달의 1일까지로 한다.
 - ②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교수의 저자 역할에 따라 저널 논문 환산 편수(4단계 BK21사업 자체 운영규정 [별첨 1-1])를 곱하여 평가한다.
 - SCI(E)급 논문 게재 : 1편당 50점
 - SCOPUS 논문 게재 : 1편당 2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 1편당 15점평가 대상 기간 중 온라인 게재(최종 출판 이전)된 논문까지 인정하며, 해당 사업년도에서 인정받은 실적은 차기 평가 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석·박사 배출 실적은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학위 취득 예정자(도서관에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까지 포함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 석사학위 : 1명당 5점
 - 박사학위 : 1명당 10점
 - ④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달에 참여교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논문 이외의 실적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인당 최고 100점까지 추가적인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 ⑤ 위의 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등급 비율을 결정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 S급 20% 내외, A급 60% 내외, B급 20% 내외
 - ⑥ 성과급의 차등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1인당 연간 지급액의 상한을 둔다.

5. (성과급 지급 시기) 사업단장은 사업년도 종료일이 포함된 달에 성과급을 집행하여 참여교수에게 지급한다.

[별첨3-1]

국제학술대회 참가등록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	성 명		연락처	
학술대회 명				
개최국/장소	/			
참가기간	년 월 일 ~ 월 일			
참가국/ 발표논문 수	약 개국 / 여편			
지원 신청액				
지급계좌				
<p>위와 같이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붙임 : ① Call for paper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해양대학교 4단계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귀하</p>				

[별첨3-3]

국제학술대회참가지원비 산출 내역서

성명	장소	기간	등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합계	사업단 지원금

※ 산출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대학원생 여비산정은 최하위 금액인 제2호-나등급으로 기준하여 산출)

[별첨4]

국제학술대회 기준 확인서

학회명		
주관		
참가국(4개국이상)	총 개국 (등)	
총발표건수(50건이상)	약 건	
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소속)논문 수 (50% 이상)	건	외국인 논문 수/총발표논문 수
		%
학회 web address		

년 월 일

4단계 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양성사업단장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국가명 : 도시명 :
참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참가결과 요약 (학술적 의의 및 연구동향)	
<p>본인은 4단계BK21사업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붙임 : ① 항공권(탑승권) 1부 ② 출입국증명서 1부 ③ 학술회의 논문집 앞표지, 목차 및 수록논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제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해양대학교 4단계BK21사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귀하</p>	

[별첨6]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 허가 업무 지침

1. 관련 근거

《4단계 두뇌한국(BK)21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 제30조 (신진연구인력) ⑧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 제14조 (신진연구인력) ②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 ③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팀 자체 운영규정》

▶ 제17조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별첨6]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및 타과제 참여 허가 업무 지침에 따른다.

1. 시간강의

① 박사후 과정생

박사후 과정생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② 계약교수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2. 타과제 참여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4단계 BK21사업 포함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 및 집행은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지침’의 박사후 연구원(박사학위소지자, Post-doc포함) 월 지급단가 기준을 따른다.

2. 절 차

사업단

- 허가서 작성
- 사업단장 승인 후, 전자결재(내부결재) 공문

3. 유의사항

가.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허가

- 1) 사업단에서 <양식1>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 (전자결재(내부결재))
- 2)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함

나.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참여 허가

- 1) 사업단에서 <양식2>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 (전자결재(내부결재))
- 2)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참여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함

4단계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한국해양대학교	사업단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사업분야	신사업분야	사업단장	채 규 정

2. 허가내용

가. 성 명 : (박사후과정생 / 계약교수)

나. 강 의 시 간 : 학년도 학기 강의 주 ()시간

다. 내 용

본인은 4단계BK21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강의를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_____ (인)

위 사람을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의 활동을 허가합니다.

확 인 자(사업단장) : _____ (인)

20 년 월 일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4단계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참여 허가서

1. 해당사업단

대 학 명	한국해양대학교	사업단명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사업분야	신사업분야	사업단장	채 규 정

2. 허가내용

가. 성 명 : (박사후과정생 / 계약교수)

나. 참여과제명(지원기관) 및 참여기간 :

다. 내 용

본인은 4단계BK21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서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 _____ (인)

위 사람을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의 활동을 허가합니다.

확 인 자(사업단장) : _____ (인)

20 년 월 일

해양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사업단